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3일, 김상훈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12.4.)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상훈의원)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

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개정안은 세관장의 담배소비세 부과고지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60조제6항만을 인용하고 있으나 담배소비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가능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60조제5항 또한 인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5년 12월 1일이

도과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7년 7월 1일로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은 세관장의 담배소비세 부과고지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60조제6항만을 인용하고 있으나 담배소비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가능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60조제5항 또한 인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5년 12월 1일이 도과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7년 7월 1일로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제60조제5항을 인용 조문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안 제16조의2).

나.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에서 2027년 7월 1일로 수정함(안 부칙).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나목 중 “제60조제6항”을 “제60조제5항·제6항”으로 한다.

안 제16조의2 중 “제60조제6항”을 “제60조제5항·제6항”으로 한다.

안 부칙 중 “2025년 12월”을 “2027년 7월”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1. ----- ----- -----.	1.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나. ----- -제60조 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 제2항-----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제60조 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 제2항----- ----- -----	나. ----- -제60조 제5항·제6항----- ----- ----- ----- ----- ----- ----- ----- -----

<u><신 설></u>	<u>이 법은 2025년 12월</u> <u>1일부터 시행한다.</u>	~~-----2027년 7월~~ ~~-----.~~
--------------------	--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제68조”를 “제60조제5항·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를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68조”를 “제60조제5항·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를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 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 라. (생 략) 2. ~ 4. (생 략)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2조(정의)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60조제5항 · 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 ----- ----- 다. · 라.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 - 제60조제5항 · 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

라 납입하여야 한다.	<u>조제2항</u> ----- ----- ----- -----.
-------------	---